

의안번호	2205948
의 퇴 인	김민석의원
회 답 일	2024.12.3.
추 계 번호	24D5415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배상책임)제3항 신설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戰死)·순직(殉職)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조(배상책임)제3항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위자료 청구(안 제2조제3항 신설)

- 현행법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전사·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과 공상을 입은 군인 등의 본인 또는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금,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국가배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법원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부

- 담금을 포함하여 총 4,090건에 7,365억 8,100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음
- 그러나 국가배상금 지급 사유별 자료별로 지급건수, 지급금액 관련 자료는 구축되어 있지 않음

[표 1] 국가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법원 판결금		배상심의회 결정금		패소 부담금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	267	146,600	99	169	414	7,868	780	154,637
2020	258	62,530	94	210	411	10,041	763	72,781
2021	275	215,908	60	83	430	7,751	765	223,742
2022	293	140,810	57	87	532	7,471	882	148,368
2023	414	128,932	75	170	411	7,951	900	137,053
합계	1,507	694,780	385	719	2,198	41,082	4,090	736,581

자료: 법무부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존 확정 사건 및 판결 중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될 건수, 향후 인정되는 유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한 기준, 소송 가액, 승소 및 패소 가능성,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금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강아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아름	02-6788-4664	krm7839@nabo.go.kr